

## **과태료의 부과기준**(제43조 관련)

### 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(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)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- 나. 최종 방류구가 다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경우 각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다. 2개 이상의 항목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부과한다.
- 라.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0회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횟수 1회로 한다.
- 마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2)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3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
 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 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조문       | (단위: 만원)<br>과태료 금액 |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차 위반              | 2차 위반 | 3차 이상 위반 |
| 가.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2항제1호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
| 1) 처리용량이 50m <sup>3</sup> /일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| 200   | 300      |
| 2) 처리용량이 50m <sup>3</sup> /일 이상 500m <sup>3</sup> /일 미만 |              | 200                | 300   | 400      |
| 3) 처리용량이 500m <sup>3</sup> /일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300                | 400   | 500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나. 법 제7조에 따른 간이공공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      | 법 제80조제2항제1호 | 100 | 200 | 300 |
| 다. 법 제7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           | 법 제80조제2항제1호 | 200 | 300 | 400 |
| 라. 법 제7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           | 법 제80조제2항제1호 |     |     |     |
| 1) 처리용량 1m <sup>3</sup> /일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 가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.5배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0  | 20  | 40  |
| 나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.5배 이상 2.0배 미만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20  | 40  | 80  |
| 다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.0배 이상 3.0배 미만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30  | 60  | 100 |
| 라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.0배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50  | 100 | 200 |
| 2) 처리용량 1m <sup>3</sup> /일 초과 5m <sup>3</sup> /일 미만  |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 가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.5배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20  | 40  | 80  |
| 나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.5배 이상 2.0배 미만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30  | 60  | 100 |
| 다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.0배 이상 3.0배 미만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40  | 80  | 150 |
| 라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.0배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70  | 120 | 220 |
| 3) 처리용량 5m <sup>3</sup> /일 이상 10m <sup>3</sup> /일 미만 |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 가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.5배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30  | 60  | 100 |
| 나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40  | 80  | 150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의 1.5배 이상 2.0배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 다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<br>의 2.0배 이상 3.0배 미만                   | 50  | 100 | 200 |
| 라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<br>의 3.0배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 150 | 250 |
| 4) 처리용량 10m <sup>3</sup> /일 이상 20m <sup>3</sup> /일 미<br>만  |     |     |     |
| 가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<br>의 1.5배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  | 80  | 150 |
| 나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<br>의 1.5배 이상 2.0배 미만                   | 50  | 100 | 200 |
| 다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<br>의 2.0배 이상 3.0배 미만                   | 70  | 120 | 220 |
| 라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<br>의 3.0배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0 | 200 | 300 |
| 5) 처리용량 20m <sup>3</sup> /일 이상 50m <sup>3</sup> /일 미<br>만  |     |     |     |
| 가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<br>의 1.5배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| 100 | 200 |
| 나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<br>의 1.5배 이상 2.0배 미만                   | 70  | 120 | 220 |
| 다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<br>의 2.0배 이상 3.0배 미만                   | 100 | 150 | 250 |
| 라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<br>의 3.0배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0 | 250 | 350 |
| 6) 처리용량 50m <sup>3</sup> /일 이상 100m <sup>3</sup> /일 미<br>만 |     |     |     |
| 가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<br>1.5배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0  | 120 | 220 |
| 나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 150 | 250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|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|--|
| 1.5배 이상 2.0배 미만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|     |  |
| 다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.0배 이상 3.0배 미만 | 120          | 200 | 300 |  |
| 라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.0배 이상         | 200          | 300 | 400 |  |
| 7) 처리용량 100m³/일 이상 300m³/일 미만        |              |     |     |  |
| 가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.5배 미만         | 100          | 150 | 250 |  |
| 나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.5배 이상 2.0배 미만 | 120          | 200 | 300 |  |
| 다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.0배 이상 3.0배 미만 | 150          | 250 | 350 |  |
| 라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.0배 이상         | 250          | 350 | 450 |  |
| 8) 처리용량 300m³/일 이상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|     |  |
| 가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.5배 미만         | 120          | 200 | 300 |  |
| 나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.5배 이상 2.0배 미만 | 150          | 250 | 350 |  |
| 다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.0배 이상 3.0배 미만 | 200          | 300 | 400 |  |
| 라)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.0배 이상         | 300          | 400 | 500 |  |
| 마. 법 제7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| 법 제80조제2항제1호 |     |     |  |
| 1) 처리대상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              | 20           | 30  | 40  |  |
| 2) 처리대상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              | 30           | 40  | 50  |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3) 처리대상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40  | 50  | 60  |
| 4) 처리대상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50  | 60  | 80  |
| 5) 처리대상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60  | 70  | 90  |
| 6) 처리대상인원 500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70  | 80  | 100 |
| 바.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1호   | 50  | 70  | 100 |
| 사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2호   | 50  | 70  | 100 |
| 아. 공공하수처리시설·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,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80조제4항제3호   | 50  | 70  | 100 |
| 자.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3호의2 | 50  | 70  | 100 |
| 차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2항2호    |     |     |     |
| 1) 처리용량이 50m <sup>3</sup> /일 이상 500m <sup>3</sup> /일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00 | 150 | 250 |
| 2) 처리용량이 500m <sup>3</sup> /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, 분뇨처리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300 | 400 | 500 |
| 카.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5항제1호   | 30  | 40  | 50  |
| 타.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4호   | 50  | 70  | 100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파.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시킨 경우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5호  | 50  | 70  | 100 |
| 하.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경우           | 법 제80조제5항제2호  | 30  | 40  | 50  |
| 거.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5항제3호  | 30  | 40  | 50  |
| 너.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| 법 제80조제4항제6호  | 50  | 70  | 100 |
| 더.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5항제4호  | 30  | 40  | 50  |
| 러.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| 법 제80조제5항제5호  | 30  | 40  | 50  |
| 머.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         | 법 제80조제5항제6호  | 30  | 40  | 50  |
| 버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7호  | 50  | 70  | 100 |
| 서.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8호  | 50  | 70  | 100 |
| 어.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9호  | 50  | 70  | 100 |
| 저.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10호 | 100 | 100 | 100 |
| 처.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경우 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11호 | 100 | 100 | 100 |
| 커.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·관리한 경우 | 법 제80조제4항제12호 |     |     |     |
| 1) 처리용량 2m <sup>3</sup> /일 이하 오수처리시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0  | 20  | 30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설, 처리대상 인원 10명 이하의 정화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 2) 처리용량 2m³/일 초과 5m³/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의 정화조      |               | 20  | 30  | 40  |
| 3) 처리용량 5m³/일 이상 10m³/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정화조     |               | 30  | 40  | 50  |
| 4) 처리용량 10m³/일 이상 20m³/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정화조    |               | 40  | 50  | 60  |
| 5) 처리용량 20m³/일 이상 50m³/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정화조   |               | 50  | 60  | 80  |
| 6) 처리용량 50m³/일 이상 300m³/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정화조 |               | 60  | 70  | 90  |
| 7) 처리용량 300m³/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의 정화조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70  | 80  | 100 |
| 터. 법 제39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13호 | 50  | 70  | 100 |
| 퍼.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·운반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14호 | 50  | 70  | 100 |
| 허.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15호 | 50  | 70  | 100 |
| 고.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시설 설치·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3항제1호  | 100 | 200 | 300 |
| 노. 법 제45조제1항·제51조제1항·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16호 | 100 | 100 | 100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 도.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 17호 | 100 | 100 | 100 |
| 로.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 18호 | 100 | 100 | 100 |
| 모.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 19호 | 100 | 100 | 100 |
| 보.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·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 20호 | 100 | 100 | 100 |
| 소.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 21호 | 100 | 100 | 100 |
| 오.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 22호 | 100 | 100 | 100 |
| 조.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 23호 | 50  | 70  | 100 |
| 초.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3항제 2호  | 100 | 200 | 300 |
| 코.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 24호 | 50  | 70  | 100 |
| 토.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·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80조제4항제 25호 | 50  | 70  | 100 |
| 포.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·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제 26호 | 50  | 70  | 100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호.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| 법 제80조제4항 제27호 | 50  | 70  | 100 |
| 구. 법 제69조제1항제1호·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| 법 제80조제4항 제28호 | 100 | 100 | 100 |